

#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 12. 2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7. 12. 5

다. 상 정 일 자 : 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97.12.1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이태경 세무과장)

### 가. 제안이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하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98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하고자 재조정된 구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이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조례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세목별 감면내용을 재정비하여 이해 도모  
(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 과세기준시점의 명확화("과세기준일 현재" 또는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로 명시) (안 제4조, 제7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5조)
-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문항의 자구수정 및 불합리한 부분 정비, 보완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7조, 제31조)
- 국가유공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각 1대의 면허세 감면확대 및 비과세 규정 신설 (안 제2조)
- 국가유공자 단체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으로 규정하고 대상사업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한정함(안 제3조)

- 향교재대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과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 (안 제9조, 제12조)
-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세 감면(안 제12조)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안 제17조)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안 제21조)
-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안 제22조)
- 유통 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신설 (안 제23조)
- 전쟁 기념 사업회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안 제24조)
- 부산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불균일 과세조항 신설 (안 제26조)
- 감면 대상의 직접사용 의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를 적용하는 조항 신설(안 제26조)
- 감면 대상 자료 제출시기를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로 하는 조항 신설 (안 제30조)
- 시행일 : '98. 1. 1부터
- 적용시한 : 2000. 12. 31까지 단, 제27조 규정은 2003년 12. 31까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97. 8. 30과 '97. 10. 1에 개정됨에 따라 조치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으로서
-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7조, 제31조는 법령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문항의 지구 수정과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이며

- 안 제4조, 제7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5조는 “ 과세기준일 현재 또는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로 하는 등 과세기준일을 명확하게 하여 ‘ 납세의무자 등의 혼선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며
- 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감면 대상 세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쉽게 알 수 있게 한 것이며
- 안 제2조의 감면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각 1대에 대하여 상이 등급 1급 ~ 6급까지와,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일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의 범위와 연계시킨 사항입니다.
- 현행조례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은 향교 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이 없고, 우리구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제12조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정이 지방세법 제289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치한 사항이며
- 안 제1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현행조례에 공사와 공단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은 민 과 관이 공동추진하는 제3섹타방식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이며
- 안 제21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안 제22조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안 제23조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 안 제24조 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구세를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각 개별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을 지방세법 제7조를 적용하여 감면토록하는 사항이며
- 안 제28조 직접사용의 의미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를 안 제30조로 감면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295조를 조례 규정으로한 것이며
- 부칙 안 제2조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은 서민들의 생활안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2002년 부산아시아 경기대회의 효율적인 준비와 추진을 위하여 계속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 시한을 연장한 사항으로서

○ 개정내용이 타당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시행토록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